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계요구·통보

제 목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

훈계대상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4. 6.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○○○○과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자 명단을 통보받아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였다.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¹⁾은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[별표1] 제1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1건의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상자 수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²⁾, 감차³⁾ 처분을 하

1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,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업무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

2) 중상자(2명이하: 운행정지 5일, 3명~4명: 운행정지 15일, 5명~9명: 운행정지 30일)
사망자(2명이하: 운행정지 30일, 3명~4명: 운행정지 60일)

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○○○○과에서는 2014. 12. 30.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○○동 000에 있는 (유)○○상운 소속 화물자동차(운전자 ○○○, 차량번호: 광주00바0000)가 2014. 11. 9. 충청북도 ○○시 ○○○면 ○○리 ○○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중상자 1명이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통보를 받았으므로,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,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7. 9. 28.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.

이렇듯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받은 총 6건의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통보사항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7. 9. 28.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

[훈계] 위 사람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통보]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(유)○○상운 등 6명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3) 중상자(10명 이상: 1대 감차), 사망자(5명~9명: 1대 감차, 10명 이상: 2대 감차)